

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)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- ❖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- 단축 후 근로시간은 **주당 15~35시간**이 되도록 해야 함
 - 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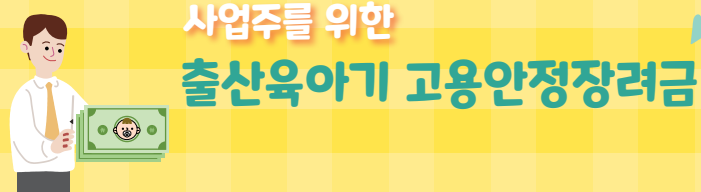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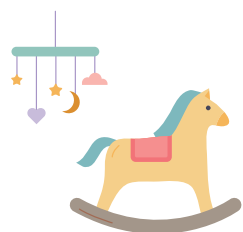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

- ❖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

주 5시간	통상임금의 10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)
나머지 단축분	통상임금의 8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)

신청기간

- ❖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육아휴직 지원금

지원대상

- ❖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지원내용

- ❖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
 - * (특례)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**월 200만 원** 지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지원대상

- ❖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지원내용

- ❖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
 - *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**월 10만 원 추가** 지원

대체인력 지원금

지원대상

- ❖ 근로자에게 출산(유·사산)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지원내용

- ❖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지원
 - *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까지 지원(최대 2개월)

일하는 엄마·아빠를 위한 출산·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

- ✓ 출산전후휴가급여
- ✓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✓ 육아휴직급여
- ✓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✓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

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출산전후휴가급여

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·후로 90일(다태아 120일)의 휴가를 주되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,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.

지원대상

- ❖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 - *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❖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)
 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: 90일분(다태아 120일) 지급
 - 대규모기업 근로자: 30일분(다태아 45일) 지급

'근로자 유산·사산휴가급여'도 있어요

- 임신근로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, 휴가급여는 휴가 기간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(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)

신청기간

- ❖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*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, 1회 분할 사용 가능

지원대상

- ❖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 - *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❖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 (23년 상한액 401,910원)

신청기간

- ❖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


육아휴직급여

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- ❖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 - *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지원내용

- ❖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 지원
- ❖ 한부모 근로자는
 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2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
 - 4~12개월: 80%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) 지원

'3+3 부모육아휴직제'도 있어요

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

-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함
-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
- 부모 모두 '22.1.1. 이후 사용했거나, 둘 중 한 명이 '21년에 사용했다면,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'22.1.1. 이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

예시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(통상임금의 100%)

- 모 1개월 + 부 1개월: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
- 모 2개월 + 부 2개월: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
- 모 3개월 + 부 3개월: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

신청기간

- ❖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